

전주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201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2017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290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차종선, 진현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우승원

피고, 항소인 A

변론 종결 2024. 9. 11.

판결 선고 2024. 11. 6.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290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1. 9. 2. 접수 제21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못하였다' 다음에 '(피고는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나머지 1,500만 원은 집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연금

판사송인우

판사설민수